

단기취업 (C-4-5)

ELIGIBILITY:

일시흥행(연예활동 등), 광고·패션 활동, 강의·강연*, 연구, 기술지도, 용역제공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취업활동을하려는 자

- ※ 수익이 따르는계약에의하여국내공·사기관 등으로부터 초청되어단기간강의·강연 활동을 하는경우
- ※ 작품 판매 등을통해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참가미술가 등도 포함
- ※ 계절근로 단기취업(C-4-1~4)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

사증종류 (유효기간 체류기간)

단수 (S): 3 개월 /90 일 더블 (D): 6 개월 /90 일 복수 (M): 1 년 , 3 년 , 5 년 /90 일

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경제력 입증자료
 -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
 - 기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**은행거래내역서(공동명의 불가)**
- ※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 제출함
4. 혼인관계증명서
5. 초청장(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)
6. 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 등
- ※ 영어캠프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자의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 관련 서류
6. 고용계약서, 용역계약서, 구매계약서 또는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확인서
8. 소관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나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- 연예인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
 -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, 지도자, 심판 등은 대한축구협회(연맹)의 추천
 - 프로 바둑기사는 한국기원 등 소속 협회의 고용추천서
 - 첨단기술인력(GOLD카드 또는 IT카드) 발급 대상자는 한국산업기술 재단 또는 한국IT 벤처기업 중소기업연합 회의 추천서
 - 외국 전문기술 인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추천서를 고용입증서류로 대체 가능
- ※ 방한활동 목적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